

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7. 5(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4. 7. 20(화)
- 다. 상정일자 :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7.21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일래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세조례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범조항의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 개정 지방세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 6인이하 → 10인이하로 위원수 강화.
-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정비.
-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지하는 지방세종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.
-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현금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 한계를 1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.

- 서류를 공시송달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군청홈페이지 게재 의무화.
- 주민세
 -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0,000분의 3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도입
 -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20%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.
- 농업소득세
 - 중간예납기간을 삭제하고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농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토록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
 - 농업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삭제 및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신설.
- 담배소비세 :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.
- 사업소득세 :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 따라 조문일부개정과 그간 평창군세조례의 잦은 개정으로 법조항의 난맥상을 일제히 점검심사하여 개정하여 조례를 체계화시키고 아울러 투명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조례의 큰 틀을 살펴보면, 본 조례가 납세자권리보호와 부과징수 사무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개정하는 것입니다.

-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· 지방세심의위원회 · 과세표준위원회 등
위원회 조직을 대폭 정비·보강하였고 부과징수자치권 강화를 위해
일반우편송달금액·방법·체납액일소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확대를
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.

- 기타 주요내용중 주민세·담배소비세·사업소세의 경우
그동안 납세불성실가산세가 없었으나, 금번 신설하였고 또한, 승계취득한
자동차의 과세방법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고,
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설치도 함께 추가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
세율조정·조문수정등이 일부있습니다.

- 이는 지방세의 자치권강화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실현하므로
조세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형식·자구등에는
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1부. 끝.